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0. 8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08. 10. 9

다. 상 정 일 자 : 제163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8.10.2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하태생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
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
임

나. 주요골자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반영된 사업은 총 2건으로
주차여건이 열악한 괴정2동과 신평1동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임.
- 취득대상 재산 현황

위 치	면 적(m ²)		소요예산 (천원)	비 고
	토 지	건 물		
계	1,154	648.13	1,669,000	공사비 229,000천원 포함
괴정2동 190-12번지의외 1필지	497	450.83	811,000	공사비 171,000천원 포함
신평1동 84-11번지의외 1필지	657	197.3	858,000	공사비 58,000천원 포함

3.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3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200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그 주요내용이 주차여건이 열악한 괴정2동과 신평1동 지역에 공동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부지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 재산취득의 필요성, 관계법령과의 적법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음

나. 재산취득의 필요성 측면은

2007년도 우리구 전역에 대한 주차장 실태조사 결과 공동주차장 건설예정 지역인 괴정2동190-12번지 일원은 고지대 경사지에 접해 있고 저소득 주거 밀집 지역으로서 도로망이 취약하고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한 지역이며, 신평1동84-11번지 일원은 실태조사 결과 공동주차장 건설 예비지역으로서 정책이주지내 저소득 주거 및 영세상가 밀집 지역으로서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극심한 지역임

다. 관계법령 적법성 부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우리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지방단체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본 건은 아직 행정절차를 미 이행함.

라. 재원조달 가능성은

공동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재산취득비와 공사비등은 총 1,669백만원이며
이중 1,168백만원은 시비보조로 2008. 8. 8 시(교통관리과)에 2009년도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예산요구 하였으며 구 부담 501백만원은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충당할 예정임

마. 이상과 같이 본 안건은

사업의 필요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공동주
차장 건설사업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급한 현안사항임을 감안하여
금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관계법령이 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시비보조 예산은 반드시 확보 바람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